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780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신태길, 김동건, 조용석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강신옥, 강유진

변론 종결 2019. 9. 20.

판결 선고 2019. 10. 18.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단510033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7. 11. 5.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4572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5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5. 12.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캐나다 법원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피고가 공시송달 또는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판결 주문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의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 또는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 기회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캐나다 법원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궤석재판(default judgement)으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공시송달 또는 이와 비슷한 송달로 인하여 제대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방어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심판으로서(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을 가리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피고가 패소한 사건'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제집행에 적합한 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권리가 원활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 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결 주문의 내용이 우리나라 재산분할 심판주문의 형식이나 기재 방식과 근본적으로 상이하다고 볼 수는 없다(우리나라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조정 결정사항과 유사하다고 보임). 그리고 이 사건 판결 주문의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었으므로 판결국인 캐나다에서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는 이상,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 27조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되는 형성력이 발생하느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이 사건 판결의 주문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을 이행할 의무가 창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재차 피고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기선, 판사 이미선, 판사 이준민

별지 부동산 목록

- | | | |
|-------------|--|-------------|
| 1. 제주도 서귀포시 | | 임야 5,693㎡ |
| 2. 제주도 서귀포시 | | 임야 1,970㎡ |
| 3. 제주도 서귀포시 | | 임야 3,197㎡ |
| 4. 제주도 서귀포시 | | 임야 3,349㎡ |
| 5. 충북 충주시 | | 전 2,049㎡ 끝. |

